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2015년 7월 10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 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15. 6. 10.
2. 제 안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3. 회부일자 : 2015. 6. 17.
4. 상 정 : 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
 - 1)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15.7.2.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

Ⅱ . 제안설명 요지(기획조정실장 류혜숙)

○ 주요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수입은 총 179억 9천 3백만원으로
공제료수입 47억 4천 4백만원,
이자수입 6억 2천 6백만원,
소방수익(수익사업 전입금) 1억 2천만원,
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천 3백만원,
전년도 이월금 124억 5천만원이고,

- 지출은 총 79억6천3백만원으로
사업비 68억원,
학교폭력피해지원비 9천 2백만원,
일반운영비 10억 7천 1백만원이며,

- 다음연도 이월금은 100억 3천만원임

Ⅲ.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엄지운)

(1) 제안경위

- 「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」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5년 6월 1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(2) 기금 결산 개요
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는 아래와 같음

〈표 7-1〉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

(단위 : 백만원)

수 입					지 출				다음연도 이월액
계	전년도 이월액	공제료 수 입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 유 목 적 사업비	인 력 운영비 (인건비)	기 본 경 비 (운영비)	
17,993	12,450	4,744	626	172	7,963	6,891	740	330	10,030

※ 기타수입 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수익금+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
※ 고유목적사업비 : 공제급여지급, 예방홍보사업, 학교폭력피해지원

○ 수입결산은 17,993백만원으로

- 공제료수입 4,744백만원과
- 이자수입 626백만원, 수익사업 전입금 120백만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3백만원
- 전년도 공제사업(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) 12,450백만원임

○ 지출결산은 7,963백만원으로

- 공제급여지급 6,624백만원과
- 예방홍보사업 99백만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92백만원
- 인건비 741백만원
- 업무추진비 33백만원
- 일반운영비 374백만원

○ 다음연도 이월액은

-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(이월금) 10,030백만원

(3) 검토 내용

- 동 기금 결산승인안은 2015년도부터 예산심사 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우리 시의회가 처음으로 심사·의결한 바,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승인받고자 개별안건으로 제출된 것임
- 서울시교육청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 52조¹⁾에 따라 2007년부터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을 운영하고 있음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14회계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100억 3,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124억 5,000만원)보다 △ 24억 2,000만원(△19.4%)이 감소한 것임

〈표 7-2〉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개)

전년도말 현재액 (A)	당해연도 증감액		당해연도말 현재액 (B)	증 감(A-B)	
	수 입	지 출		금액	비율
12,450	5,543	7,963	10,030	△2,420	△19.4

1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52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

-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,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-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금의 운용수익, 적립금, 결산상 잉여금, 차입금,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.

○ 수입액은 총 55억 4,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48억 5,800만원)보다 14.1%, 6억 8,500만원이 증가한 것임

- 공제료 수입은 전체 수입(55억 4,300만원)의 85.5%인, 47억 4,400만원으로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내 학교안전사고 발생 추이, 공제급여의 지급실적,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결정하며, 2014회계연도의 경우는 교육부 장관이 고시²⁾한 금액대로 공제료를 결정하여 수납한 것으로 전년대비 8억 4,900만원 (21.8%) 증가한 것임

· 다만,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³⁾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동안 공제료 미납에 대한 제재 근거법령이 없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나, 2015년 1월 20일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개정⁴⁾됨에 따라 2015년 7월 21일부터는 공제료 납부명령 등 공제료 미납에 대한 필요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- 이자수입은 6억 2,600만원으로 이월금 감소 및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하여 직전회계연도(7억 3,100만원)보다 14.4% 감소한 것으로

2) 2014년도 학교안전공제회 공제료 산정기준 고시(학생1인당 기준 공제료)
(단위 : 원)

구 분	유	초	중	고
2014	1,770	2,420	4,980	5,970
2013	1,500	2,120	4,440	5,470

3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(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)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. 다만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학교의 학교장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4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공제료)

⑥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제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제가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료 납부명령 등 그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1.20.>

-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경우 정기예금(일부 저축보험 포함), 보통예금, 임대보증금으로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, 이자수입은 정기예금(92억원)과 보통예금에서 발생한 것임
- 소방수익은 1억 2,000만원으로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5)에 따라 공제회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발생한 것임

〈표 7-3〉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주요항목	2014	2013	증 감	
				금액	비율
전년도 이월금		12,450	15,104	△2,654	△17.6
수입	소 계	5,543	4,858	685	14.1
	공제료수입	4,744	3,895	849	21.8
	이자수입	626	731	△105	△14.4
	소방수익	120	120	0	0.0
	지 원 금	0	60	△60	순감
	학교폭력구상금회수	53	52	1	1.9
지출	소 계	7,963	7,512	451	6.0
	사업비(공제급여 등)	6,800	6,487	313	4.8
	사업비(학교폭력피해지원)	92	70	22	31.4
	기관운영비	1,071	955	116	12.1
당해연도말 현재액		10,030	12,450	△2,420	△19.4

○ 지출액은 총 79억 6,3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(75억 1,200만원)보다 6.0%, 4억 5,100만원이 증가한 것임

5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(공제회의 사업)

② 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-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0조의3(공제회의 수익사업 등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(이하 "공제회"라 한다)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학교시설에 대한 소방·전기 등의 안전점검 대행
2. 소독·청소 등의 환경개선 업무
3. 그 밖에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

- 공제급여는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(68억원 9,200만원)의 96.1%인, 66억 2,400만원이 지급된 바,
- 지급현황을 검토하면, 직전회계연도보다 지급 건수가 2,074건 증가하고 지급액도 5억 2,000만원 증가한 바, 학교폭력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체육활동 확대되고 직업체험,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보상건수 등이 연동되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됨
- 또한, 1건당 요양급여 지급금액은 35만 4,000원으로 직전회계연도(34만 2,000원)보다 의료 수가 및 물가상승에 따라 12,000원 증가된 것임

〈표 7-4〉 공제급여 지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		2013		증감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계	13,501	6,624	11,427	6,104	2,074	520
요양급여 ⁶⁾	13,473	4,781	11,410	3,905	2,063	876
장해급여 ⁷⁾	23	1,555	12	1,508	11	47
유족급여 ⁸⁾	2	248	3	649	△1	△401
위로금 ⁹⁾ 등	3	40	2	42	1	△2

6)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

제36조(요양급여) ①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.

7) 제37조(장해급여)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.

8) 제39조(유족급여) ①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「국가배상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되,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.

9) 제40조의2(위로금) ①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IV. 심사결과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2. 토론요지 : 없음
3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4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5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

의안 번호	52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5년 6월 1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사업개요

가. 근거
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, 제18조, 제24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
-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, 제53조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

나. 목적

-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공제급여의 충당
- 학생,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, 적정하게 보상
- 교직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보전
-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수행

2. 2014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

○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명세서

(단위:천원)

수 입					지 출				다음연도 이월액
계	전년도 이월액	공제료 수 입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 유 목 적 사업비	인 력 운영비 (인건비)	기 본 경 비 (운영비)	
17,993,840	12,450,591	4,744,274	626,012	172,963	7,963,194	6,891,959	740,977	330,258	10,030,646

※ 고유목적사업비: 공제급여지급, 예방홍보사업, 학교폭력피해지원

※ 기타수입: 수익사업(학교소방시설관리사업) 운영수익금+학교폭력피해지원사업구상금

○ 수입결산은 17,993,840천원으로

- 공제료수입 4,744,274천원과
- 이자수입 626,012천원, 수익사업 전입금 120,000천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구상금 52,963천원
- 전년도 공제사업(학교폭력피해지원 이월금 포함) 12,450,591천원임

○ 지출결산은 7,963,194원으로

- 공제급여지급 6,624,444천원과
- 예방홍보사업 98,872천원
- 학교폭력피해지원 91,678천원
- 인건비 740,977천원
- 업무추진비 32,879천원
- 일반운영비 374,344천원

○ 다음연도 이월액은

- 2014년도 순세계잉여금(이월금) 10,030,646천원임

3. 참고사항

가.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치(탁)처	예치 및 예탁액					비고
		2011년도말 현재액	2012년도말 현재액	2013년도말 현재액 [㉠]	2014년도말 현재액 [㉢]	증 감 ([㉢] - [㉠])	
합계		14,638	15,104	12,450	10,030	-2,420	
	농협은행	14,638	9,904	9,687	7,767	-1,920	
	우리은행	0	3,500	2,200	1,700	-500	
	하나은행	0	1,700	0	0	0	
	임차보증금	0	0	563	563	0	

나.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연도별	조 성 액							집 행 액							잔액 [㉠] - [㉢]
	계 [㉠]	출연금	보조금	공제 료수입	구상금 회수 (이자 포함)	예수금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 [㉢]	공제 급여	학교폭 력 지원비	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	차입금 상환	예수금 상환	
~2006년 까지	44,468	9,307		23,014			12,147	29,378	25,495		3,883				15,090
2007	2,990	42		2,220			728	3,765	3,180		585				-775
2008	2,988	30		2,191			647	3,149	2,511		638				-161
2009	3,947	30		3,201			596	3,496	2,809		687				451
2010	4,402	30		3,652			600	3,905	3,132		773				497
2011	4,245	30		3,518			577	4,709	3,795		914				-464
2012	6,145	30	1,668	3,710			617	5,679	4,441	71	1,167				466
2013	4,858	60		3,895			731	7,512	6,104	70	1,338				-2,654
2014	5,543	0		4,744	53		626	7,963	6,624	92	1,247				-2,420
계	79,586	9,559	1,668	50,145	53		17,269	69,556	58,091	233	11,232				10,030

※ 공제급여: 사고보상비, 학교폭력지원비: 학교폭력피해지원,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: 운영비 등